

1 FAQ 추가

Q-1

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의 일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

○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각각의 편입 상품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매도해야 합니다.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포트폴리오 자산에 대한 매도 비율 결정
(가입자 스스로 매도 비율 결정 or 인출 필요금액에 맞춘 매도 비율 결정)
- ②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각각의 상품 잔고에 대해서 ①에서 결정한 매도 비율만큼 매도 진행

[예시1] 가입자가 스스로 매도 비율을 정하는 경우

구성 상품	예금	펀드	비고
① 편입비중	30%	70%	
② 매입금액	3,000,000원	7,000,000원	합계 10,000,000원
③ 잔고(수량)	3,000,000원	7,000,000좌	펀드 매수 당시 기준가 1,000원 가정
④ 평가금액	3,150,000원	9,100,000원	예금은 5%, 펀드는 30% 수익 발생 가정

⑤ 매도비율	10%		가입자가 직접 지정
⑥ 매도수량	300,000원	700,000좌	③×⑤
⑦ 매도결제금액	315,000원	910,000원	예금은 5%, 펀드는 30% 수익 발생 가정

⑧ 잔여 수량	2,700,000원	6,300,000좌	③-⑥
⑨ 잔여 평가금액	2,835,000원	8,190,000원	④-⑦

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해 주신 FAQ 추가 및 수정 내용 중
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기존 FAQ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,
그리고 FAQ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.
(디폴트옵션 상황반 논의 및 노동부·금융위·금감원 검토과정 통해 제외)

[예시2] 중도인출 요청 등으로 인하여 인출 필요금액에 맞춰 매도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

*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도인출 희망액을 기준으로 매도비율 산정

구성 상품	예금	펀드	비고
① 편입비중	30%	70%	
② 매입금액	3,000,000원	7,000,000원	합계 10,000,000원
③ 잔고(수량)	3,000,000원	7,000,000좌	펀드 매수 당시 기준가 1,000원 가정
④ 평가금액	3,150,000원	9,100,000원	예금은 5%, 펀드는 30% 수익 발생 가정

⑤ 중도인출 희망액	5,000,000원		
------------	------------	--	--

⑥ 매도비율	41%		⑤÷④
⑦ 매도수량	1,224,490원	2,857,143좌	③×⑥
⑧ 매도결제금액	1,285,714원	3,714,286원	예금은 5%, 펀드는 30% 수익 발생 가정

⑨ 잔여 수량	1,775,510원	4,142,857좌	③-⑦
⑩ 잔여 평가금액	1,864,286원	5,385,714원	④-⑧

* 실제로는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펀드는 매도 과정에서 기준가가 변동되므로, 부족하게 팔리는 경우를 감안하여 중도인출 희망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(예: 10% 증액)으로 매도 수량을 결정함. 이는 퇴직연금사업자 별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음

** 매도로 인해 발생한 금액 중 중도인출 요청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대기성자금으로 보유함

Q-2

판매 중인 포트폴리오 내 구성상품의 위험등급이 상향되어 포트폴리오 위험등급도 상향된 경우 상품명과 실제 위험등급이 상이하게 되는데, 이때 처리방법은?

-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이 상향된 경우 상품명과 실제 위험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.
 -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와 고용노동부에 위험등급이 상향되었음을 즉시 안내하고 기존 위험등급에 맞춘 변경(안)을 마련하여 신속히 고용노동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.

Q-3

고용노동부로부터 상품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언제부터 적립금 이전 및 판매가 가능한가요?

- 변경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옵트인 하는 것은 변경 승인일 이후부터 즉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.
 - *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최대한 신속히 반영 필요
-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하는 것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*부터 가능합니다.
 - *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이전을 14일까지 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,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

Q-4

사전지정운용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부터 연내 적용하고, 내년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에 적용하는 등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
-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및 전산망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모든 DC, IRP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 - 다만, 전산망 구축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적용이 가능한 가입자부터 적용*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* 합리적 사유 없이 일부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가(매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현황 모니터링 예정)
- 그러나, '23.7.12부터는 모든 DC, IRP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Q-5

정기예금은 3회 분할 인출 시 전액 매도되는데, 포트폴리오 내 정기예금이 3회 분할 인출되어 전액 매도 필요한 경우 운영방안?

- 정기예금은 해당 상품 약관에 따라 3회 초과 분할 인출 시 해지(매도)될 수 있으며,
 - * 보유중인 정기예금 잔고가 전량 매도된다는 것이 아니라 3회 초과된 분에 해당하는 명세가 전부 매도 됨을 의미
 - 이 경우 포트폴리오에는 정기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만 남게 되므로,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, 분할 인출이 3회에 이르기 전에 가입자가 이와 같은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.

Q-6

현물이전하는 상품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옵트인으로 해석하나요?
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중인 자산(현물)의 이전은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며,
 -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자산도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.
 - * 확정기여형(DC) → 확정기여형(DC), 확정기여형(DC) → 개인형(IRP) 모두 가능
- 다만, 실제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하고, 운용 중인 상품, 포트폴리오 내 상품 전체가 현물이전이 가능할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.
- 한편, 퇴직으로 인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현물이전될 경우 해당 가입자가 이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적립금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현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.

Q-7

포트폴리오 최소 매매 금액 설정이 가능한가요?

- 최소 매수 또는 매도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.

Q-8

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받았다고 할 때 실제 적용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(기존) A상품 50%, B상품 50% -> (변경) A상품 40%, B상품 60%인 경우 A상품을 10% 매도 & B상품 10% 매수해야 하는지, A, B 상품 모두 전체 매도 후 다시 변경 비율대로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?

-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이 변경되었다면, 기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도 변경된 비중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.
- 이때 기존에 보유 중인 상품을 전량 매도 후 변경된 비중대로 새로 매수할지, 아니면 차이가 나는 비중만큼만 매도/매수를 수행할지는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됩니다.

Q-9

A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,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(A상품, B상품, C상품)을 운용중인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(B상품)을 직접 매수하려면 A상품과 C상품 매도 후 가능한가요?

-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Opt-In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이 매도 되어야 합니다.
- 따라서 A상품과 C상품 매도 후 B상품 매수가 가능합니다.

Q-10

가입자가 A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 놓았으나 운용 중인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B상품으로 옵트인 하였고, 이후 원리금보장 상품 만기로 A상품으로 일부 적립금이 자동 운용된 경우, 가입자가 옵트인을 통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?

- 가입자는 “하나”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해야 하나, 예외적으로 복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(아래 예시 참고).
- (예시) 1.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선정한 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옵트인 하는 경우
2.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 만기 도래 시 적용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- 다만, 법률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옵트인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상품을 보유할 경우 추가 매수는 불가능합니다.
- 복수의 상품 중 일부를 매도(예: 4개 상품 보유 시 3개 상품 매도)하고 단일 상품만 보유할 경우에 한해 추가매수가 가능합니다.

2 FAQ 보완 사항

Q-14

승인상품 수를 7~10개로 한정할 이유가 있나요?

<기존 답변>

- 퇴직연금사업자는 **가입자의 투자성향**(초저위험, 저위험, 중위험, 고위험)을 고려하여 상품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.

<수정 답변>

- 퇴직연금사업자는 **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위험도**(초저위험, 저위험, 중위험, 고위험)를 고려하여 상품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.

Q-71

월납, 분기납 등 빈번하게 입금되는 부담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던 가입자의 경우, 만기 시마다 매번 가입자통지를 포함한 6주간의 대기기간을 적용해야 하나요?

[참고: 동일 상품에 대한 만기 상환 처리 사례]

<기존 답변>

- ※ 동일한 상품의 기준점을 잡는 방식, 가입자가 적립금의 일부만 매도할 경우 언제 매수한 적립금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할지(예: 선입선출 적용)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

<수정 답변>

- ※ 동일한 상품의 기준점을 잡는 방식, 가입자가 적립금의 일부만 매도할 경우 언제 매수한 적립금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할지(예: 선입선출 등)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